

야간근로자 지원범위 및 자격 확인

- 지원대상 : 22시~익일 06시 사이 정기·반복(월 4회 이상) 근로를 제공하는 자
 - 교대·순환근무자,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자, 심야영업 종사자, 노무제공자, 플랫폼종사자, 프리랜서 등도 포함

교대근무자	일정한 근무편성에 따라 주간·야간 등의 근무시간대를 교대로 근무하는 자
순환근무자	근무조·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순환·변경되는 자
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	특정 주·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자(근로기준법, 제51조·제51조의2)
심야영업종사자	영업 특성상 야간시간대에 정기·반복적으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
노무제공자	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(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제91조의15)
플랫폼 종사자	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(산업재해보상보험법, 제91조의15)
프리랜서	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자 (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)

- 자격요건: 기존 민간아이돌봄서비스 공통 자격요건 적용

- 자격확인 : 근로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증빙기준 적용

구분	증빙자료
임금근로자(순환·교대·탄력)	교대표, 순환근무표, 근무 편성표, 근로계약서 등
노무제공자	용역계약서·위탁계약서 등 노무제공 관계 확인자료 + 업무·노무 제공 내역 등 시간 확인자료
프리랜서	계약서, 업무수행 내역 등 업무시간·장소 확인자료
배달·플랫폼 종사자	플랫폼 운행·접속·배달·업무수행 내역 등
증빙자료 제출 곤란 시	사업주 확인서 + 제출 가능한 기타 증빙자료